

대한장애인골프협회 심판위원회 내부규정 개정(안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1조 경기위원(심판) 자격검정 및 교육 ----- <u>심판위원회</u>가 주관한다.</p>	<p>1조 경기위원(심판) 자격검정 및 교육 ----- <u>중앙회 심판위원회</u>가 주관한다.</p>
<p>2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위원 (심판)의 경기배정 <u><생략></u></p>	<p>2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위원 (심판)의 경기배정 <u><현행과 같음></u></p>
<p>3조 경기위원(심판)의 보수교육 및 자격유지</p> <p>①대한장애인골프협회 경기위원 (심판)증은, 자격취득후, 매 2년 안에 보수교육 1회 이상 받아야 하며, <u>16개 시도</u> 지역관계없이,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1회 미필 시, 1년 자격정지 / 2회 미필 시, <u>2년</u> 자격정지 / 2회 이상 미필 시, <u>3년</u> 자격정지</p> <p>③자격회복여부는 <u>심판위원회</u> 소청 후 재심의를 거친다.</p>	<p>3조 경기위원(심판)의 보수교육 및 자격유지</p> <p>①대한장애인골프협회 경기위원 (심판)증은, 자격취득후, 매 2년 안에 보수교육 1회 이상 받아야 하며, <u>17개 시도</u> 지역관계없이,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1회 미필 시, 1년 자격정지 / 2회 미필 시, <u>3년</u> 자격정지 / 2회 이상 미필 시, <u>5년</u> 자격정지</p> <p>③자격회복여부는 <u>중앙회 심판위원회</u> 소청 후 재심의를 거친다.</p>
<p>4조 경기위원(심판) 등록</p> <p>① <u><생략></u> ② <u><신설></u></p>	<p>4조 경기위원(심판) 등록</p> <p>① <u><현행과 같음></u> ② <u>현 거주지 주소 시도에 등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5조 경기위원(심판) 활동 제한</p> <p>①~② <u><생략></u> ③ <u><신설></u></p>	<p>5조 경기위원(심판) 활동 제한</p> <p>①~② <u><현행과 같음></u> ③ <u>선수나 심판으로 한번 등록하면 변경할 수 없다.</u></p>

현행	개정(안)
<p>6조 경기위원(심판) 자격 활용 <u><생략></u></p> <p>7조 경기장 출입제한 <u><생략></u></p> <p>8조 심판배정 <u><신설></u></p> <p>8조 경기위원(심판)의 품위 및 의무 ①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모든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,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야하며, 개인행동을 하지 않음을 규정으로 한다. ②<u>품행이 단정해야 한다.</u> ③~⑤ <u><생략></u> ⑥위의 사항을 1회라도 어길 시, 전국대회 심판 2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며, <u>상벌위원회, 징계위원회</u>에 회부하여 결정한다.</p>	<p>6조 경기위원(심판) 자격 활용 <u><현행과 같음></u></p> <p>7조 경기장 출입제한 <u><현행과 같음></u></p> <p>8조 심판배정 ①<u>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전국체전, 협회장배, 최강자전 심판배정은 각 시도 별 2인 추천으로 하며, 나머지 선발 인원은 중앙심판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배정한다.</u> ②<u>대회를 주최하는 시도의 심판 배정은, 추가 4인까지 추천 가능하다.</u></p> <p>9조 경기위원(심판)의 품위 및 의무 ①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모든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,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야하며, <u>대회일정중 절대</u> 개인행동을 하지 않음을 규정으로 한다. ②<u>대회측에서 발행한 ID카드 (신분증)는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.</u> ③~⑤ <u><현행과 같음></u> ⑥위의 사항을 1회라도 어길 시, 전국대회 심판 2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며, <u>중앙 심판위원회, 법제 상벌위원회</u>에 회부하여 결정한다.</p>

현행	개정(안)
<p>9조 시,도,군 심판위원장 선출 시,도,군 심판위원장은, 대한 장애인골프협회 경기위원(심판) 1급, 2급, 3급 소지자에 한하며, 대한장애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필히 심판등록이 되어야 하며, 시,도,군에서는 직선제로 선출 되어야 한다.</p> <p>(단,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, 각 시,도,군 협회장의 1인 추천으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)</p>	<p>10조 시,도,군 심판위원장 선출</p> <p>①시,도,군 심판위원장은, 대한 장애인골프협회 경기위원(심판) 1급, 2급, 3급 소지자에 한한다.</p> <p>②대한장애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필히 심판등록이 되어야 한다.</p> <p>③시,도,군에서는 직선제로 선출 되어야 한다.</p> <p>④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, 각 시,도,군 협회장의 1인 추천으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

대한장애인골프협회 심판위원회 내부규정

제정: 2018. 01. 23.

개정: 2022. 03. 24.

1조 경기위원(심판) 자격검정 및 교육

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주관하는 심판 1급, 2급, 3급 자격증 강습회 및 보수교육은 **중앙회 심판위원회**가 주관한다.

2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위원(심판)의 경기배정

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심판은, 심판 1인이 1경기 18홀로 심판 배정이 이루어진다.

② 경기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심판배정은 달라질 수 있다.

3조 경기위원(심판)의 보수교육 및 자격유지

① 대한장애인골프협회 경기위원(심판)증은, 자격취득후, 매 2년 안에 보수교육 1회 이상 받아야 하며, **17개 시,도** 지역관계없이,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1회 미필시, 1년자격정지 / 2회 미필시, **3년** 자격정지 / 2회 이상 미필시, **5년** 자격정지

③ 자격회복여부는 **중앙회 심판위원회** 소청후 재심의를 거친다.

4조 경기위원(심판) 등록

①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매1년마다, 심판등록을 하여야하며, 심판 미등록 시, 전문체육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인정하는 전국대회 (대한장애인협회장배,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최강전)는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② **현 거주지 주소 시도에 등록 하여야 한다.**

5조 경기위원(심판) 활동 제한

①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심판등록한 자는, 전국대회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.

②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선수등록한자는, 전국대회 심판으로 참가할 수 없다.

③ **선수나 심판으로 한번 등록하면 변경할 수 없다.**

6조 경기위원(심판) 자격 활용

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주관하는 모든대회 및 시,도,군에서 주최,주관하는 모든대회는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발행한 경기위원(심판) 1급, 2급, 3급소지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, 본 협회에서 발행되지 않은 자격증은, 어떠한 자격증이라도 통용되지 않는다.

7조 경기장 출입제한

- ①모든대회 진행시, 경기장출입은, 경기위원장, 심판위원장, 경기위원(심판), 선수, 운영위원 외에는, 경기장 출입을 할 수 없다.
- ②경기위원장, 심판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, 출입을 허용한다.

8조 심판배정

- ①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전국체전, 협회장배, 최강자전 심판배정은 각 시도별 2인 추천으로 하며, 나머지 선발 인원은 중앙 심판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배정한다.
- ②대회를 주최하는 시도의 심판 배정은, 추가 4인까지 추천 가능하다.

9조 경기위원(심판)의 품위 및 의무

- ①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모든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, 대한장애인골프협회에서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야하며, 대회일정중 절대 개인행동을 하지 않음을 규정으로 한다.
- ②대회측에서 발행한 ID카드(신분증)는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.
- ③선수와 의 논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.
- ④논쟁이 발생 시,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, 심판위원장, 경기위원장에게 판정을 맡긴다.
- ⑤경기장 내에 출입 시, 음주, 흡연은 절대 금한다.
- ⑥위의 사항을 1회라도 어길 시, 전국대회 심판 2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며, 중앙 심판위원회,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.

10조 시,도,군 심판위원장 선출

- ①시,도,군 심판위원장은, 대한장애인골프협회 경기위원(심판) 1급, 2급, 3급 소지자에 한한다.
- ②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필히 심판등록이 되어야 한다.
- ③시,도,군에서는 직선제로 선출되어야 한다.
- ④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, 각 시,도,군 협회장의 1인 추천으로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